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808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 **전체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식품 등에 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율심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심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등 법률에 따라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하는 경우도 예외 없이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제품 출시를 위한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한편,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 등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식품 등에 표시하거나 해당 식품 등을 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당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증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속 표시·광고한 자가 표시·광고 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표시·광고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제제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 표시·광고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제제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표시·광고 관리를 위한 수단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 **전체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진영

● 법률 제17808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표시·광고"를 "표시·광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 대로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제14조"를 각각 "제9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제14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중지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율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자율심시기구에 심의를 신청한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